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4, pp.1-36
<https://doi.org/10.29212/mh.2020.114.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제1공화국기(1948~1960) 육군 예비전력 동원체제의 형성

윤시원*

1. 서론
2. 6·25전쟁 이전 육군 예비전력 동원체제 구축 시도와 호국군
3. 6·25전쟁기 육군 예비전력 동원체제 구축의 실패: 국민방위군과 민병대
4. 1950년대 중반 예비사단 창설과 육군 예비전력 동원체제 구축
5. 결론

1. 서론

한국의 징병제는 1949년 병역법 공포를 통해 제도화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징병제가 제도적으로 안정화 되는 과정에서 예비전력 동원체제의 확립은 중요한 위치를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한국 징병제의 제도화와 국민개병주의의 형해화』의 3, 4, 5장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차지하고 있다. 프로이센이 1814년 9월 제정한 병역법을 통해 병역 자원의 역종을 구분하고 예비역 자원을 관리한 이래¹⁾ 징병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프로이센의 방식을 따라 예비역 자원을 관리했다. 병역자원을 현역과 예비역으로 구분하고 유사시 예비역을 현역으로 동원하는 병력동원체제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그 위력을 입증했다. 징병제를 통해 평시에 축적한 예비 병력자원을 전시에 동원함으로써 병력 규모를 확대하고 전시의 인력 소모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비전력 동원체제는 징병제를 완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의 징병제와 예비역 제도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역사학 분야의 징병제 연구 중에서도 예비전력 동원체제에 중점을 둔 논문이 수 편 생산되었다. 6·25전쟁 시기의 예비전력 동원체제에 대한 연구는 예비군의 전사(前史)로서 창군기의 호국군과 6·25전쟁 시기의 국민방위군을 다루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²⁾ 국민방위군과 관련해서는 남정옥의 국민방위군 연구와 이상호의 예비 제5군단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남정옥은 호국군 창설기에 형성된 인적 자원이 청년방위대를 거쳐 국민방위군 창설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³⁾ 이상호는 예비 제5군단이 단순히 국민방위군의 후속 조직으로 노무단 임무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전투임무를 동시에 수행했음을 규명하였다.⁴⁾ 1960년대 후반 향토예비

1) Heinz Stübiger, "Die Wehrverfassung Preußens in der Reformzeit. Wehrpflicht im Spannungsfeld von Restauration und Revolution 1815-1860", *Die Wehrpflicht: Entstehung, Erscheinungsformen und politisch-militärische Wirkung* (München: Oldenbourg, 1994), p.46.

2) 신영진, 『한국전쟁시 동원연구』, 『한국전쟁연구: 점령정책·노무운동·동원』, 국방군사연구소, 199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지원사: 인사·군수·민사지원』, 국방군사연구소, 1997.; 박일송, 『전쟁중 국군의 충원과 교육훈련』,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3) 남정옥, 『6.25전쟁시 예비전력과 국민방위군』, 한국학술정보, 2010.

4) 이상호, 『한국전쟁기 예비 제5군단과 육군예비사관학교』, 『아세아연구』 62-4, 고려

군 창설을 다루는 연구들은 향토예비군 창설이 이루어진 정치적 배경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⁵⁾ 그러나 이 연구들은 예비군 제도 형성과정에서 등장한 특정 제도를 설명하는데 집중했다. 이 때문에 창군 이후의 예비전력 동원체제를 통사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제1공화국 시기는 징병제가 형성되는 과정이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제도가 도입되어 운용되다가 폐기되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징병제의 기틀이 잡혀간 것이다. 그러므로 징병제의 기반이 형성된 제1공화국 시기의 예비전력 동원체제 형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표는 제1공화국 시기 육군 예비전력 동원체제의 형성 과정을 통사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다. 징병제 도입 초기 병력동원체제의 발전 과정을 시기적으로 파악하고 각 단계별로 시행된 제도의 특징을 규명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징병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먼저 예비전력 동원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호국군과 국민방위군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민병대의 조직과 한계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징병제 하에서 예비전력 동원체제를 완성한 육군 예비사단의 편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9.

5) 강민철, 『1968년 안보위기론 조성과 향토예비군 창설』,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주영윤, 『예비군 창설 정책결정과정 연구』, 『군사연구』 143, 육군군사연구소, 2017.

2. 6·25전쟁 이전 육군 예비전력 동원체제 구축 시도와 호국군

징병제에서 예비군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무병역을 마치고 예비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유사시 예비군으로 소집되어 단기간에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창군 초기부터 예비전력 확보 방안을 강구했다. 국방부는 1948년 8월부터 15개 연대, 병력 50,000명 규모의 예비군 편성을 준비했다. 한국 정부의 재정 부족과 무기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범석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 편성계획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⁶⁾ 1948년 9월 20일에 열린 회의에서 군사고문단장은 예산 부족을 감안해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현역부대의 간부를 활용해 호국군을 편성하고, 현역 1개 연대당 호국군 1개 연대를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⁷⁾

호국군이라는 명칭은 미국의 주방위군(National Guard)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⁸⁾ 그 기본 개념도 미국 제도의 영향을 받았다. 미국 주방위군의 특징은 모병제하에서 예비군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데 있다.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하면서 독일식 징병제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병역제도로 확산되었다. 1870년 이후 미국에서도 징병제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미국의 자유주의적 정치 문화로 인해 주류가 되지 못했다.⁹⁾ 미국이

6) Weekly Items of Major and Minor Importance as concerns DIS(Aug. 16, 1948), RG554 Entry UD-UP19 Box4.

7) Notes from Conference between Lee Bum Suk, Mr.Hwang(Interpreter), Col Wright, Lt Col Voss and General Roberts, 20 September 1000 to 1145. RG554 Entry UD-UP19 Box4.

8) 대한독립청년단 「징병제즉시실시」, 『현대일보』 1948년 7월 8일 1면. 호국군의 영문번역명은 National Guard이다. 6·25전쟁 시기의 국민방위군도 동일하게 National Guard로 번역되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영문초록에서는 호국군을 National Guard로, 국민방위군은 second National Gurad로 지칭할 것이다.

현대적인 예비군 확보를 위해 택한 방식은 기존에 주 단위로 편성되어 있던 민병대를 현대화하는 것이었다. 미국 의회는 1903년과 1908년 두 차례에 걸쳐 민병대법을 개정해 전쟁을 비롯한 유사시 민병대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 권한을 강화했다. 민병대법 개정안으로 각 주의 민병대는 연방정부의 예산 및 장비지원을 받고 전시에는 대통령의 완전한 통제를 받았다. 1908년의 민병대법 개정은 전시 민병대의 복무기간과 복무장소를 연방정부가 통제하도록 했다.¹⁰⁾

한국 국방부가 징병제를 추진하면서도 예비군 제도로 모병제 국가의 제도를 채택한 점은 이례적이다. 이 당시 국방부가 징병제를 추진하면서도 예비전력 동원체제만은 모병제에 기반을 두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당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1948년 12월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조선국방경비대가 국군으로 개편된 직후였다. 국방부는 징병제 실시를 천명하고 있었으나 국군 조직 자체는 여전히 모병제하에 있었고 예비군을 확보할 인적 자원이 부족했다. 예비군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모병을 시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호국군 편성의 법적근거인 「국군조직법」은 1948년 11월 30일에야 공포가 되었다. 법적 근거가 늦게 마련되어 국방부의 호국군편성계획은 1948년 12월 초가 되어서야 완성됐다. 국방부의 계획안은 군사고문단의 제안을 수용해 현역 보병여단이 각각 호국군 1개 여단의 편성을 담당하고 무기 및 장비를 지원하도록 했다.¹¹⁾ 육군본부 는 창설계획에 의거 육군본부에 호국군무실을 설치하고 초대 군무

9) John Whiteclay Chambers II, "American Views of Conscription and the German Nation in Arms in the Franco-Prussian War" in *The People in Arms : Military Myth and National Mobilization since the French Revolution*,(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95~96.

10) Michael D. Doubler, *Civilian in Peace, Soldier in War : The Army National Guard, 1636-2000*,(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3) pp.144~151.

11) Organization of Reserve Army(Dec. 16, 1948), RG554 Entry UD-UP19 Box2.

실장에 신응균 중령을 임명했다. 호국군의 실제 편성과 교육훈련을 담당할 현역 보병연대는 ‘편성담임연대(編成擔任聯隊)’로 지정되었다. 편성담임연대에는 현역 장교와 부사관으로 구성된 호국군 고문부가 설치되었다.¹²⁾ 1948년 12월 중순 기준으로 제1, 2, 3, 5, 6, 7, 8, 10, 11, 13 등 10개 연대에 호국군 고문부가 설치된 것이 확인된다.¹³⁾

<표 1> 호국군 편성 계획안(1948년 12월)

호국군 담당 현역 여단	호국군 여단	호국군 연대
1여단	101여단	101, 111, 121연대
2여단	102여단	102, 103, 113연대
3여단	103여단	106, 105, 115연대
6여단	106여단	107, 108, 110연대

* 출처: Organization of Reserve Army(Dec. 16, 1948), RG554 Entry UD-UP19 Box2.

호국군 편성은 모병제의 원칙에 따라 12월 초 간부모집으로 시작됐다. 호국군 제1기 모집은 12월 7일 시작됐다. 1차로 모병을 시작하는 부대는 제1연대(서울, 개성, 의정부 지구), 제11연대(수원, 인천 지구), 제12연대(온양 지구), 제2연대(대전, 공주 지구), 제3연대(이리, 전주 지구), 제6연대(대구, 김천 지구), 제7연대(청주, 충주 지구), 제8연대(춘천, 원주 지구), 제10연대(강릉 지구) 등 9개 연대였다.¹⁴⁾

호국군 장교는 만 21세부터 60세까지, 하사관은 만 20세부터 35세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사병은 만 17세부터 28세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장교 및 하사관 지원 자격은 과거의 장교경력자, 군사지식과

12) 신응균, 「대한육군호국군의 병제적 고찰」, 『국방』 제3호, 1949년 3월, 27쪽.

13) 국방부, 『국방부사 제1집』, 1954, 20쪽.; 『육군발전사 상』, 226쪽.

14) 「호국군 장교모집」, 『한성일보』 1948년 12월 9일 2면.

통솔능력이 있는자, 호국군 간부가 될 경우 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 한정했다.¹⁵⁾ 간부후보생 지원자의 합격 여부는 편성담임연대의 연대장이 결정했다.¹⁶⁾ 사병은 과거 군사교육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청년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자였다. 지원자는 호적초본과 이력서 외에 지역 유지의 추천서와 경찰서장의 신원보증서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현역 지원자의 제출 서류와 거의 동일했다.¹⁷⁾ 간부 지원 자격 요건 중 두 번째 조항은 모호하지만 과거 군사경력이 있는 자가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반이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병 지원요건은 청년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간부 및 사병의 지원자격은 현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49년 2월 24일에는 시흥에 호국군 간부 훈련소가 개설되었다.¹⁸⁾ 초대 훈련소장으로는 호국군국장 신응균 중령이 임명됐다. 호국군 간부후보 1기생은 총 119명으로 3월 16일 교육을 수료했다. 국방부는 3월 4일 호국군 간부훈련소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의 제1지구경리대로 이전하고 3월 25일 2기생 75명의 교육을 시작했다. 호국군 간부훈련소는 4월 1일 호국군 간부학교로 개칭되었다. 호국군 간부학교는 6월 30일 영등포로 이전했으며 7월 16일 호국군사관학교로 개칭됐다. 호국군사관학교는 8월 8일 제4기 수료생 548명을 임관하고 같은 달 15일 호국군 해편과 함께 해체되었다.¹⁹⁾ 한국군의 부대증편에 맞춰 호국군 편성계획도 변경됐다. 변경된 계획에 따라 1949년 3월 중순까지 편성된 호국군 부대 현황

15) 「호국군 간부요원모집」, 『경향신문』 1948년 12월 19일 1면.

16) 신응균, 앞의 글 27쪽.

17) 「호국군모집요강」, 『호남신문』 1949년 1월 21일 2면; 「제일차호국군대모집요항」, 『민주중보』 1949년 6월 21일 1면.

18) Weekly Activities of KMAG(Feb. 28, 1949), RG554 Entry UD-UP19 Box9.

19) Korean Reserve Corps(Mar. 14, 1949), RG554 Entry UD-UP19 Box9.; 『육군 발전사 상』, 227쪽.

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호국군 편성 현황(1949년 3월 14일 기준)

부 대		주둔지	관할구역	병력	
				인가병력	실제병력
101여단	여단본부	서울	서울, 경기도	289	0
	101연대	서울, 의정부		3,054	968
	111연대	수원, 인천		3,054	1,569
102여단	여단본부	대전	충청남도, 전라북도	289	0
	102연대	대전, 공주, 논산		3,054	2,006
	103연대	전주, 이리, 남원		3,054	811
	113연대	온양, 예산, 홍성		3,054	836
103여단	여단본부	부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289	0
	106연대	대구		3,054	635
	105연대	부산		150	0
	116연대	마산		150	0
105여단	여단본부	광주	전라남도	289	0
	120연대	광주		150	0
	115연대	여수		150	0
106여단	여단본부	청주	충청북도, 강원도	289	0
	107연대	청주, 보은		3,054	1,678
	108연대	춘천, 원주		3,054	1,961
	110연대	강릉, 삼척		3,054	1,315

* 출처: Korean Reserve Corps(Mar. 14, 1949), RG554 Entry UD-UP19 Box9.; 육군본부 편, 『육군발전사 上』, 육군본부, 1970, 226쪽.

1949년 3월 기준의 호국군 편제표는 정규군의 확장에 맞춰 호국군 1개 여단이 추가로 증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대의 단대호가 한자리 숫자에서 100단위로 변경된 점이 특징이다. 제105

여단은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101, 102, 106여단은 본부가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하 연대 편성이 먼저 추진되고 있다.

호국군은 예비군의 일환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간부를 충원하는데 있어 현역 전투부대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다. 이 점은 호국군 여단장으로 부임한 장교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호국군 주요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된 현역 장교들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호국군 주요 지휘관

호국군 여단	여단장		여단참모장
제101여단	오광선 대령		
제102여단	유승열 대령	박시홍 중령	조개욱 중령 ²⁰⁾
제103여단	안병범 대령		
제105여단	김관오 대령	김정호 중령	
제106여단	권준 대령		
호국군 사관학교	신응균 중령	장석윤 중령	

* 출처: 호국군사관학교총동창회 편, 『호국군사』, 호국군사관학교총동창회, 2001, 26-35쪽.

호국군의 주요 지휘관 중 광복군 및 중국 국민당군 계열은 오광선, 김관오, 권준, 박시홍, 조개욱 등 5명이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계열은 유승열, 안병범, 신응균, 장석윤 등 4명이다. 만주국군 계열은 김정호 1명이다. 오광선 대령과 권준 대령의 경우 군사적 능력보다는 독립운동경력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한직이지만 예우는 할 수 있는 호국군 여단장에 임명됐다는 설이 있다.²¹⁾ 권준 대령은 제 106여단장을 역임한 뒤 수도경비사령관에 임명됐으나 미군사고문단

20) 「군산호국군 조직에 난삽」, 『군산신문』 1949년 2월 25일 2면.

21) 한용원, 『창군』, 박영사, 1984, 111쪽.

장으로부터 무능하고 정치적인 배경에서 임명됐다는 혹평을 받았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신용균 또한 낡은 일본 군사교리를 고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²²⁾ 이렇듯 호국군 여단장에 임명된 고급 장교 중에는 미국 군사고문단으로부터 군사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연령대가 비교적 높아 일선 전투부대의 지휘관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도 있었다. 호국군의 하급 간부는 지역유지 계층을 중심으로 충원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국군사관학교 출신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지역유지 계층이 호국군 간부로 충원되어 40대 이상의 장년층도 3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²³⁾

호국군 병력 모집은 청년단을 활용해 비교적 단시일 내에 이루어졌다. 문제는 호국군 훈련 임무를 맡을 현역 기간요원과 무기 보급이었다. 1949년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호국군 사령관 송호성 준장이 군사고문단을 대동하고 강원도의 호국군 제106여단 사령부 및 예하 연대, 그리고 경기도의 제111연대 예하 부대들을 시찰한 결과 호국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군사교육을 실시할 자질을 갖춘 현역 군인이 부족해 호국군의 군사훈련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호국군을 지원해야 할 정규군 부대도 장비가 부족해 호국군 부대는 무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상당수의 부대는 훈련용 목총만 지급받은 상태로 군복조차 없었다. 정규군의 지원을 받은 일부 부대가 일본제 소총을 소수 보급 받았지만 상당수는 녹이 슨 상태였다.²⁴⁾

호국군 간부 양성을 위해 설립한 호국군사관학교 조차 화기학(火器學) 수업에서 실사격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다.²⁵⁾ 6·25전쟁이 발

22) Roberts to Bolte(August 19, 1949), *RG554 Entry UD-UP19 Box 8*. pp.4~5.

23) 호국군사관학교총동창회 편, 『호국군사』, 호국군사관학교총동창회, 2001.

24) "Report of Inspection, Reserve Units, Kangwando Province(May 31, 1949), *RG554 Entry UD-UP19 Box10*. pp.3~4.

25) 호국군사관학교총동창회편, 『호국군사』, 2001, 호국군사관학교총동창회, 38-39쪽.

말한 뒤 동원된 호국군 간부들은 기초적인 전술 교육은 커녕 자격 한번 못해본 경우도 있었다. 소집된 호국군 간부가 받은 군사교육이 기초적인 제식훈련에 불과한 사례도 있었다.²⁶⁾ 호국군은 예산 및 장비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병사구사령부 설치가 결정되자 해체되었다. 국방부는 호국군 여단 본부를 해체해 병사구사령부 편성에 사용하고 여단 이하의 부대에 속한 호국군 대원을 예비역으로 편입했다.²⁷⁾

병역법 시행과 함께 기존의 제도 일부가 변경되었다. 국방부는 호국군 해체에 따라 현역에 충원할 수 없는 병역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청년방위대를 조직했다.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1949년 11월 27일 대한청년단을 주축으로 병력 20만의 청년방위대를 편성한다고 발표했다.²⁸⁾ 방위대 편성은 지역 단위로 이루어졌다. 서울특별시 및 도 청년단에는 사단에 해당하는 방위단을 설치하고, 군 단위에는 연대급인 지대, 읍·면 단위에는 대대급인 편대, 동·리 단위에는 중대급인 구대 혹은 소대를 편성했다. 청년방위대 편성은 1950년 4월 말 완료되었다.²⁹⁾

청년방위대의 교육은 호국군에 소속되어 있던 현역 간부 일부가 담당했다. 국방부는 최종적으로 청년방위대를 17개 사단 규모로 증강할 계획이었으며, 경찰 보조 임무를 수행하던 민보단도 청년방위대에 통합하려 했다. 경찰은 청년방위대가 급속히 확장되어 민보단을 흡수하는 상황을 반대했다. 청년방위대는 군사조직으로 만들어졌으나 기존 청년단체 출신의 간부들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공연히 정치 개입을 꾀했다. 방위대 차장 문봉제(文鳳濟)는 청년방위대 간부들의 총선 출마를 시도하기도 했다.³⁰⁾

26) 육군사관학교제팔기생회, 『노병들의 증언 : 육사8기사』, 1992, 593~594쪽.

27) 「호국군을 예비군으로 개편」, 『동아일보』 1949년 9월 3일 2면.

28) 「청년방위대 편성 예비역임무 담당」, 『동아일보』 1949년 11월 28일 1면.

29) 『육군발전사 상』, 228쪽.

6·25전쟁 이전 국방부가 시도한 예비전력 동원체제 구축은 일관성이 부족한 정책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호국군을 편성 단계에서 해체하고 청년방위대를 창설한 결과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실질적인 전력으로 동원 가능한 예비군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예비전력으로 동원할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징병제를 추구하면서도 예비군제도는 모병제에 의존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졌다. 예비군 조직에 필요한 무기 및 장비를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한 점도 한계로 작용했다. 국방부가 조직한 호국군은 무기 및 장비 부족으로 예비군의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6·25전쟁이 발발한 뒤에야 국방부는 징병제의 틀 안에서 예비전력 동원체제의 구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3. 6·25전쟁기 육군 예비전력 동원체제 구축의 실패: 국민방위군과 민병대

6·25전쟁 초기 대한민국 육군의 병력 동원은 현역 사단의 병력 손실을 보충하는 데 주력했다. 예비전력 동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계기는 중공군의 참전이였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현역으로 동원되지 않은 제2국민병을 국민방위군으로 편성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방위군은 1949년 해체된 호국군이 가지고 있던 예비군의 성격을 이어받은 조직이었다.³¹⁾ 국민방위군 편성은 정규군 숫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병역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는 정규군 규모의 제한으로

30) Korea Youth Guard Corps(Apr. 10, 1950), RG554 Entry UD-UP19 Box19. pp.1~2.

31) 남정욱, 앞의 책 51~57쪽.

징집할 수 없는 인력을 예비군으로 동원하려 했다. 미국의 대한군사원조는 원조를 제공할 한국군 병력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었다. 한국군 병력 상한선은 1950년 9월 205,000명에서 1952년 1월 250,000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³²⁾

국방부차관 장경근(張暎根)은 1950년 12월 15일 국회에서 국민방위군 편성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가장 큰 이유는 예비군의 역할을 해온 청년방위대는 사설단체에 불과해 법적근거가 없고 명령계통이 불확실하므로 폐지하고 미국의 내셔널가드를 본받아 국방부가 통제하는 예비 병력을 집단적으로 훈련해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장경근은 국민방위군 편성의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재정적인 요인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국민방위군을 둔다면 정규군에 소요되는 예산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같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개병 사상에 부합하며, 일종의 예비군으로 육군의 지휘명령 계통에 속하는 점도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군사적인 편리성이다. 평시에 예비군 조직이 없다면 유사시 소집 수속에 시간이 많이 걸려 융통성이 떨어진다. 국방부는 국민방위군을 조직해 훈련을 시키면 유사시 바로 소집해 현역 동원이 가능하다고 보았다.³³⁾ 정부는 1950년 12월 21일 「국민방위군설치법」을 공포했다. 국민방위군 대상자는 만 17세부터 40세까지의 제2국민병에 해당하는 남성이었다.³⁴⁾

1951년 1월 3일부터 2월 5일에 걸쳐 국민방위군 10개 사단이 편성되었다. 편성 당시 국민방위군 사단의 단대호는 제1사단부터 제11사단이었다.³⁵⁾ 1951년 2월 초에 국민방위군 단대호는 호국군과 유

32) Kenneth W.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 11 July 1951~27 July 1953*(May, 1958), RG550 Entry 2A1-2AA1 Box85, p.46.

33) 국회사무처, 「제2대 국회 제9회 제5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950년 12월 15일, 6쪽.

34) 「국민방위군설치법」(법률 제172호), 『관보』 419호, 1950년 12월 21일 1쪽.

35) 남정옥, 앞의 책 117~120쪽. 국민방위군사단의 편성은 사단장의 임명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사한 세자리 숫자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방위군 사단의 단대호는 제101사단에서 제111사단으로 변경되었다.³⁶⁾

그러나 소집된 국민방위군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국민방위군 지휘부가 예산을 부정 착복하는 사고가 더해져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국민방위군에 소집되어 집결지까지 도착했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국민방위군 교육대에 입소하지 못하고 떠돌이 신세가 된 경우도 있었다.³⁷⁾ 1951년 2월 중순까지 제주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의 국민방위군 훈련소 및 예비사단에 수용된 국민방위군의 숫자는 435,038명에 달했다. 이중 257,610명이 경상남도, 101,951명이 경상북도, 40,872명이 전라남도, 34,053명이 제주도, 288명이 전라북도, 264명이 충청남도에 수용되어 있었다.³⁸⁾ 단기간에 40만 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되었으나 이들을 지원할 준비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다. 헌병사령부 제2처가 각지의 국민방위군 교육대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배급되는 식사는 하루 쌀 4홉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적발됐다.³⁹⁾ 영양실조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국민방위군은 많은 병사자를 냈다.

국민방위군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대처는 1951년 2월이

36) Korean National Guard, Memorandum by Major Sam J. Adams Jr.(Feb 15, 1951), RG338 Entry A1-1301 Box 17.(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번호 AUS004_77_00C0016_017), pp.2~3.; 국민방위군 사단의 단대호가 변경된 정확한 시기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민방위군 제11사단 사단장 임명일이 1951년 2월 5일이라는 점, 그리고 세자리 단대호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김윤근 명의의 문건이 첨부된 유엔한국민사지원단 문서의 생산일이 1951년 2월 15일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2월 초에 단대호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방위군 사단의 세자리 단대호는 호국군 여단의 세자리 단대호와 유사한 면이 보이므로 양자의 상관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7) 국회사무처, 『제2대국회 제10회 제6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951년 1월 15일, 3쪽.

38) Korean National Guard, Memorandum by Major Sam J. Adams Jr.(Feb 15, 1951), RG338 Entry A1-1301 Box 17.(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번호 AUS004_77_00C0016_017), pp.2~3.

39) 尹宇景, 『晩省錄 : 단 한번 잠시 느껴본 행복감』, 서울프레스, 1992, 251쪽.

되어서야 시작됐다. 1951년 2월 9일 국무회의에는 「제2국민병해당 장정대책안」이 상정됐다. 대책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⁴⁰⁾

1. 각 수용소에 수용 중인 35세 이상의 장정과 신체검사에 불합격된 장정은 불합격증명서를 발부하여 귀향시킬 것.
 - (1) 귀향에 필요한 급양을 지급할 것.
 - (2) 신체 쇠약 또는 병환 중에 있는 자는 사회부에 넘겨 구호할 것.
2. 수용 중에 있는 장정에 대하여서는 식량 증배(增配), 의료대책을 세울 것.
 - (1) 수용소에 전염병이 발생 중에 있는 곳도 있고 또는 발생할 우려가 많으므로 보건부와 국방부가 상호협의하여 적절한 의료대책을 세울 것.

정부는 내용을 일부 수정해 귀향 대상을 만 36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대책안을 통과시켰다.⁴¹⁾ 정부의 대책은 뒤늦은 것이었다. 이미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희생자를 내는 상황이 되어야 의료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있었다. 한국 육군본부는 2월 중순부터 국민방위군 훈련소에서 예방접종 및 살충제 살포를 담당할 반을 편성했다. 각 반은 소위 계급의 군의관 1명과 사병 4명으로 편성되었다. 경상남도의 경우 2월 21일부터 예방접종 및 살충제 살포가 시작됐다.⁴²⁾

정부의 뒤늦은 대책과 더불어 국민방위군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도 여론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국방부장관 신성모는 국민방위군 사건 수사책임자인 헌병사령부 제2처장 윤우경(尹宇景)에게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명령했다. 윤우경은 사건을 송치한 뒤 신성모를 찾아가 사망자와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으므로 여론을 고려해 장기형을 언도할 것을 건의했다. 1차 공판에

40) 「제2국민병해당장정대책안」, 1951년 2월 9일,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35060, 134쪽.

41) 「36세이상의 국민병 등 귀향시키기로 결정」, 『조선일보』 1951년 2월 11일 조간 2면.

42) ROK National Defense Camps, National Guard and Youth Groups(Feb. 22, 1951), RG338 Entry A1-1301 Box 17.(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번호 AUS004_77_00C0007_042)

서는 김윤근이 기소각하로 무죄 판결을 받고 부사령관 윤익헌(尹益憲)이 3년 6개월, 기타 피고들은 1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헌병대의 수사 초기에는 김윤근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태연자약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신성모가 재판에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 결과 다수의 고급 장교들이 김윤근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헌병사령부는 이 사실이 공개될 경우 여론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김윤근이 뇌물로 사용한 기밀비 관련 사항은 은폐하기로 결정했다.⁴³⁾

국민방위군 교육대가 해산되고 2주가 지난 1951년 4월 16일 기준으로 여전히 10,654명의 환자가 소집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⁴⁴⁾ 국민방위군에 소집되었다가 귀향하게 된 대원들에 대한 지원도 부실했다. 국민방위군에서 소집 해제된 장정들을 수송할 수단이 부족해 도보로 귀향해야 했다. 귀향 여비는 현금 3천 원이나 쌀 몇 되, 복어 몇 마리를 받는 게 고작이었다. 이것은 2~3일치의 여비에 불과했다. 서울·경기 지역에서 소집된 장정들이 귀향하는 데 10~15일 가량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면 부족한 조치였다.⁴⁵⁾

1951년 4월 30일에는 국회에서 「국민방위군설치법폐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5월 12일에 공포되었다.⁴⁶⁾ 이로써 국민방위군은 정식으로 해체되었다. 국민방위군이 해체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감독 및 관리 소홀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해 국민 여론이 악화된 데 있다. 그러나 당장 현역으로 보충하지 않아도 될 인원을 불필요하게

43) 윤우경, 앞의 책 253~257쪽.

44) 남정옥, 앞의 책 111쪽.

45) 국회사무처, 「제2대국회 제10회 49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951년 3월 23일, 3쪽; 767쪽.

46) 법률 제195호 「국민방위군설치법폐지에 관한 법률」, 『관보』 470호 1951년 5월 12일, 1쪽.

잡아두는 것이 농업을 비롯한 국가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⁴⁷⁾

국민방위군 해체에 따라 예비전력을 운용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생겼다. 국방부는 국민방위군이 수행한 예비군 임무를 대행하기 위해 1951년 5월 5일 예비 제5군단을 창설했다. 예비 제5군단은 제101사단(마산), 제102사단(통영), 제103사단(울산), 제105사단(창녕), 제106사단(여수) 등 5개 예비사단으로 편성됐다.⁴⁸⁾ 예비사단의 주둔지는 기존의 국민방위군 사단 및 교육대 주둔지와 동일했으며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되었던 인원 중 상당수가 소속되었다.⁴⁹⁾ 국민방위군 사단의 주둔지와 단대호를 예비사단과 비교해 보면 제101사단(마산), 제102사단(통영), 제103사단(울산), 제105사단(창녕)은 예비 제5군단 예하의 예비사단과 단대호 및 주둔지가 동일하다. 다만 여수의 국민방위군 사단은 단대호가 제107사단이다.⁵⁰⁾ 국민방위군이 해체되고 조직이 축소되면서 국민방위군 제107사단이 예비 제106사단으로 개칭된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 편성된 예비사단은 미 제8군을 지원하는 노무부대로 조직되었다. 다만 제102, 106사단은 후방의 공비토벌 작전 같은 전투임무도 수행했다.⁵¹⁾ 육군본부는 1951년 9월 병력 충원의 어려움 때문에 제102사단과 제106사단을 해체했다. 동시에 작전지시 제58호를 내려 제101사단은 미 제1군단에, 제103사단은 미 제10군단에, 제105사단은 미 제9군단에 배속시켰다.⁵²⁾ 예비사단이 노무부대로 개편되

47) Letter from Jack McFall(assistant secretary of state) to Senator Sparkman (May 8, 1951), 국방군사연구소편, 『한국전쟁자료총서57: 미국무부 한국국내상황 관계문서 XIX 1951.4.13.~6.18』, 국방군사연구소, 1999, 253쪽.

48) 남정욱, 앞의 책 156쪽.

49) 양영조, 『한국전쟁과 동북아 국가정책』, 선인, 2007, 298~302쪽.

50) Korean National Guard, Memorandum by Major Sam J. Adams Jr.(Feb 15, 1951), RG338 Entry A1-1301 Box 17.(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번호 AUS004_77_00C0016_017), pp.2~3.

51) 남정욱, 앞의 책 158쪽.; 이상호, 앞의 글 149쪽.

어 미군 전투부대에 배속됨에 따라 미군이 기존에 운용하던 한국인 노무인력은 예비사단으로 대체되었다. 미군의 전투 지원 임무를 수행한 예비사단은 전투부대와 달리 1개 사단이 6개 연대로 편성되었다.⁵³⁾ 6개 연대로의 편제개편은 1951년 8월 20일 완료되었다.⁵⁴⁾

국민방위군은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해체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노무사단으로 개편되어 6·25전쟁 휴전시까지 전투지원 임무를 담당했다. 노무사단의 병력 충원도 제2국민병 소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노무사단에 배치된 노무자는 현역 군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⁵⁵⁾ 그러나 이들은 주로 제2국민병으로 소집되었으므로 넓은 범위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방위군사건은 병역법 개정 논의를 일으켰다. 1951년 4월 28일 제10회 국회 67차 본회의에서는 무소속 김의준(金意俊) 의원 외 109명이 병역법 개정 및 향토방위대령 폐지안을 제출했다.⁵⁶⁾ 국회의 병역법 부분개정 논의는 국민방위군의 법적근거가 된 제2국민병역 관련 조항과 6·25전쟁 이전에 폐지되어 유명무실한 호국군 관련 조항의 삭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5월 11일의 79차 본회의 병역법 수정안 제1독회에 제출된 법안은 기존 병역법의 호국군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한 내용이었다.⁵⁷⁾ 이날 독회에서 무소속 김종회(金從會) 의원은 국민방위군의 법적 근거인 병역법의 제2국민병역

52) 양영조, 앞의 책 298~299쪽.

53) Organization of Korean Services Corps(KSC) (Jul. 14, 1951), RG338 K 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1953 Box 38,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번호 AUS004_36_00C0241_130) p.2.

54) 양영조, 앞의 책 302쪽.

55) Status of Korean Service Corps(KSC) (Sep. 19, 1951), RG338 K 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1953 Box 38,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번호 AUS004_36_00C0241_115)

56) 국회사무처, 「제2대 국회 제10회 제67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951년 4월 28일, 37쪽.

57) 국회사무처, 「제2대 국회 제10회 제79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951년 5월 11일, 19~20쪽.

조항이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폭넓은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았고, 그 폐해로 인해 징병기피 풍조가 생겨났다고 비판했다.⁵⁸⁾

호국군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1951년 5월 25일 부분 개정된 병역법이 공포됐다.⁵⁹⁾ 개정된 조항은 대부분 육군의 병역 동원체제에 관한 내용으로 호국군 관련 조항이 주를 이루었다. 청년 군사훈련을 명시한 제77조도 삭제됐다. 국민방위군 사건의 교훈과 전쟁 중의 현실을 반영해 소집 절차에 대한 조항도 개정됐다. 제58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기타 필요에 의해 소집을 하게 될 경우 소집할 병종, 소집 연령을 공고하도록 했다.

6·25전쟁을 계기로 대규모의 예비역 자원이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예비역 군인을 관리하고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정전협정이 체결되던 시점에서는 대한재향군인회가 현역에서 제대해 예비역에 편입된 인력을 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했다. 국방부는 대한재향군인회가 예비군을 관리하고 유사시에 동원할 조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⁶⁰⁾ 대한재향군인회는 1953년 11월 12일 사단법인 제대장병직업보도회로 개편되어 제대군인 직업알선 및 군사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⁶¹⁾ 그러나 제대장병직업보도회는 개편 당시의 목표와 달리 제대군인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회원으로 가입된 제대군인들을 각종 명목으로 소집하여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도 제식훈련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⁶²⁾ 예비군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별도의 조직이 필요했다.

58) 국회사무처, 「제2대 국회 제10회 제79차 국회본회의」, 1951년 5월 11일, 21쪽.

59) 「병역법」(법률 제203호), 『官報』 제477호 1951년 5월 25일, 1쪽.

60) 「징소집의 능률화 도모」, 『동아일보』 1953년 11월 2일, 2면.

61) 「재향군인회를 직업보도회로 개편」, 『동아일보』 1953년 11월 11일 2면.

62) 「국방장관에 고함」, 『동아일보』 1955년 5월 11일자 3면.

국민방위군이 해체된 이후 국민병을 동원할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 정부는 1952년 말부터 제2국민병 훈련 및 동원을 위해 민병대 조직을 추진했다. 1953년 1월 6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작성한 민병단(民兵團)안이 논의되었다.⁶³⁾ 국방부가 작성한 「민병단창설요강」은 민병단 창설 취지를 “이러한 초비상적인 국난의 경우를 예상한 우리의 선배들은 범치국가에 있어서 국민총력전을 수행하여 민족과 국토를 방위할 수 있도록 헌법 제30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병역법 제58조에는 전시·사변 시에는 모든 병역의무자는 소집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다. 국민개병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멸공통일전을 조속히 최소한의 희생으로, 그리고 완전한 전승으로써 종결시키기 위하여 민병단을 창설하는 바이다.”라고 규정했다.⁶⁴⁾ 민병단이 총력전 수행을 위한 병역동원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부가 작성한 방안은 민병단의 운영을 국방부, 내무부, 교육부가 공동으로 할 것을 규정했다. 국방부는 민병단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내무부는 제정, 경리를 담당하며, 문교부가 학과 교육 및 시설을 담당하는 것이었다.⁶⁵⁾

1953년 7월 23일 대통령령 제813호 「민병대령」을 공포와 함께 민병대 조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7월 25일 민병대총사령부가 설치되고 예비역 육군 중장 신태영(申泰英)이 총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총사령부가 설치된 다음 날인 7월 26일에는 국방부 본부에 민병총사령부 창립준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에는 민병대 총사령관인 신태영이 임명되었고 위원으로는 공군대령 양정수(楊正秀), 육군대령 고재필(高在秘), 이영주(李永周), 김문경(金文經), 공군중령 한갑수

63) 「제2회 국무회의록」 1953년 1월 6일, 국가기록원관리번호 BA0085168

64) 국방부, 「민병단창설요강」 1953년 1월, 국가기록원관리번호 BA0084192, 234쪽.

65) 「민병단창설요강」 235쪽.

(韓甲洙)가 임명되었다. 민병대 창설 사무가 과중해 7월 31일에는 육군대령 김귀암(金貴巖), 신능기(申能綺), 김기훈(金基煥) 등 3명이 추가로 준비위원에 임명되었다. 민병대 총사령부는 1953년 8월 12일 편성을 완료했다. 그 구성은 총사령관 예하에 참모장과 제1, 제2국을 두었다. 제1국은 예하에 기획과와 통계과, 경리과를 두고 제반 행정 및 운영을 담당했으며 제2국은 예하에 훈련과 및 정훈과, 검열과를 두어 교육훈련을 담당했다.⁶⁶⁾ 각 지역의 민병대 운영 책임은 병사구사령부가 지고 있었으며 실제 운영은 구청장, 시장, 군수를 통해 이루어졌다.⁶⁷⁾

민병대의 소집 대상은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 및 국민병에 해당하는 인적자원으로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성이었다.⁶⁸⁾ 다만 최초 창설때인 제1기 민병대원 모집 시에는 만 36세 이하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지방의원과 공무원, 학생을 제외했다.⁶⁹⁾ 민병대는 국민학교를 하나의 부대 단위로 편성되었으며 민병대장은 국민학교장이 임명되었다.⁷⁰⁾ 군사훈련교관은 민병대가 설치된 지역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적인 면에서 군사훈련은 병사구사령부가 담당하고 일반적인 감독 책임은 구청장·시장·군수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를 택하고 있었다.⁷¹⁾ 훈련은 민병대원의 생업에 지장이 없는 시기와 시간을 택하여 실시하도록 했다. 훈련 내용은 연간 군사훈련 90시간과 학과교육 180시간 내외로 하도록 했다.⁷²⁾ 국민학교를 기반으로 민병대를 조직했기 때문에 민

66) 민병총사령부, 『민병대1년지』, 1954, 29~31쪽.

67) 「민병대령」(대통령령 제813호), 『관보』 제941호, 1953년 7월 23일, 1쪽.

68) 「민병대령」(대통령령 제813호), 『관보』 제940호 1953년 7월 23일, 1쪽.

69) 「지방공무원 및 의원 민병대훈련서 제외」, 『자유신보』 1953년 12월 13일 2면.; 민병총사령부, 위의 책 8~9쪽.

70) 단, 교장이 여성일 경우에는 교감이 민병대장에 임명되었다. 민병총사령부, 위의 책 54~55쪽.

71) 「민병대령」(대통령령 제813호), 『관보』 제941호, 1953년 7월 23일, 1쪽.

72) 민병총사령부, 위의 책 28쪽.

병대 조직은 외형적으로 단기간에 구축되었다. 1953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의 9개 구에 민병대가 조직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9월 15일까지 목표의 50%인 1,459개 민병대가 조직되었다. 10월 6일에는 전국 민병대의 조직이 완료되었다. 1954년 7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 총 4,018개의 민병대가 편성되었으며 훈련교관 12,497명, 대원 1,201,203명을 두었다.⁷³⁾

민병대는 평시 생업에 종사하면서 여유 시간에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호국군과 유사한 면이 있었다.⁷⁴⁾ 그러나 호국군이 지원제로 대원을 모집한 반면 민병대는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성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있어 징병제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었다. 한편 민병대는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도 띄고 있었다. 정부는 민병대 창설과 함께 대한청년단을 해체해 민병대에 편입시키고자 했다. 이에 따라 1953년 9월 17일 대한청년단중앙단부와 각 도 단장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대한청년단 해체와 민병대 편입을 선언했다.⁷⁵⁾

민병대의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된 점은 예산 및 교육이었다. 민병대령은 민병대의 예산을 원칙적으로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즉 운영예산을 국방비에 계상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국민학교 사친회에서 민병대 운영비의 상당액수를 부담했다. 1954년 12월 27일 문교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953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민병대 운영에 소요된 예산은 18,200,456원으로 이중 사친회비가 절반을 넘는 10,815,212원에 달했다. 국방부예산인 민병대보조금은 4,246,408원에 불과했다.⁷⁶⁾ 교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민병대는 군사적 목적을 띄고 있었으나 전체 교육 시간 중에

73) 민병총사령부, 50~51쪽, 앞의 책 부록1 민병대조직현황통계표.

74) 「순국방장관 민병대령 공포에 답」, 『경향신문』 1953년 7월 26일.

75) 「한청해산성명」, 『동아일보』, 1953년 9월 19일 1면.

76) 「민병대경비에 골치않는 국민교」, 『조선일보』 1954년 12월 29일 조간 2면.

서 실질적인 군사훈련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

<표 4> 민병대원 훈련 내용

훈련과목	연간 훈련시간	비 고
군사예절	5	
개인위생	10	
체 육	14	
내무위생	15	
제식훈련	26	
방공훈련 및 군법교육	(7)	과외 과목
총 계	70, (7)	() 과외 과목

* 출처: 민병총사령부, 『민병대1년지』, 1954, 99쪽.

민병대의 교육 과목 중 실질적인 군사훈련에 해당하는 것은 연간 26시간을 차지하는 제식훈련과 정규과목 이외의 과외과목으로 실시하는 방공훈련이 있었다. 실제 전투에 필요한 화기 교육은 기초적인 소총 조작뿐이었다.⁷⁷⁾ 자질이 부족한 민병대장의 가혹행위도 문제가 되었다. 1953년 9월 6일에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민병대장 겸 진부국민학교장 장태갑(張台甲)이 민병대원 20명을 곤봉으로 구타하여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⁷⁸⁾

민병대는 병역의무 대상자 전체를 동원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호국군보다 징병제에 부합하는 예비전력 동원체제였다. 그러나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국방부와 내무부, 문교부 등 3개 부가 공동으로 운영에 관여해 행정적으로 관리가 복잡한 점도 문제였다. 민병대 또한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군사조직은 아니었다. 예비사단이 편성되면서 예비전력

77) 민병총사령부, 앞의 책 27쪽.

78) 「대장 기압에 20명이 부상」, 『조선일보』 1953년 9월 19일 조간 2면.

교육훈련 및 동원을 담당할 수 있게 되자 민병대는 존립 이유를 상실했다. 정부는 1955년 5월 9일자로 민병대령 폐지를 공포했다.⁷⁹⁾ 이로서 민병대는 편성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해체되었다. 국방부가 6·25전쟁기에 추진한 예비전력 동원체제는 모두 단기간 동안 존속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1950년대 중후반에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예비사단을 통한 예비전력 동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4. 1950년대 중반 예비사단 창설과 육군 예비전력 동원체제 구축

정전 이후 국방부는 6·25전쟁기까지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새로운 예비전력 동원체제를 구상했다. 정전 이후 한국 정부는 예비전력 동원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두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첫째는 미국의 군사원조 증대였다. 두 번째는 6·25전쟁기에 본격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다수의 예비역이 육성된 것이었다. 195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육군을 전역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인원은 155,351명에 달했다.⁸⁰⁾ 1952년부터 징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예비역 자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국방부는 예비전력 동원체제 개편의 첫 단계로 제대장병직업보도회와 민병대로 이원화된 예비전력 동원체제를 일원화하려고 했다.

79) 「민병대령 폐지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1027호), 『판보』 제1322호, 1955년 5월 9일, 1쪽; 「민병대정식해체」, 『동아일보』 1955년 5월 9일 2면; 「민병대의 해체」, 『마산일보』 1955년 5월 9일 2면; 「제대장병보도회 불일대로 해체」, 『동아일보』 1955년 5월 13일 3면.

80) HQ Republic of Korea Army, *Recommendations(Undated)*, RG330 Entry NM-12 185 Box12(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번호 AUS030_08_00C0011), p.30.

이를 위해 예비전력 동원 및 훈련을 전담할 부대를 창설할 필요가 있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임시예비군훈련단이었다. 1954년 초 육군본부는 미국 측에 임시예비군훈련단(Provisional RTC)을 창설해 만 30~33세의 예비역을 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육군본부는 각 예비군훈련단을 하루에 1,000명의 예비군을 훈련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하고, 한 기수당 8주간의 교육과정을 9개월 동안 시행하면 156,000명의 예비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럴 경우 임시예비군훈련단에서 배출한 인력과 현역에서 전역한 인원 54,000명을 합하면 210,000명의 훈련된 예비 병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⁸¹⁾

육군본부가 제시한 방안을 검토한 미 제8군사령부는 자체적으로 한국 예비군 편성 방안을 연구했다. 미 제8군사령부의 연구는 일일 평균 징집 인원을 900명으로 늘려서 9개월 내로 11만 명에 달하는 연령 19~20세의 현역 대상자를 모두 징집하고, 이와 비슷한 숫자의 장기복무자를 전역시키면 164,000명의 예비 병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⁸²⁾ 충분한 예비군을 확보하면 현역 병력을 감축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 맥스웰 테일러(Maxwell D. Taylor) 미 제8군사령관은 장기적으로 한국군 현역 병력을 20~25만 규모로 감축하고 80~90만 명 규모의 예비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⁸³⁾

육군본부의 임시예비군훈련단 편성 제안은 임시적인 조치였다. 육군본부는 장기적으로 15개의 예비사단을 동원해 예비군 훈련 및 전시동원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15개의 예비사단을 편성해

81) Survey of Republic of Korea Manpower Reserves (May. 20, 1954), RG330, Entry NM-12 185 Van Fleet Report Files, 1954-1954. Box 10.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번호 AUS030_08_00C0005), pp.5~6.

82) Survey of Republic of Korea Manpower Reserves (May. 20, 1954), pp.5~6.

83) Memorandum : Debriefing of General Maxwell Taylor (Jun. 9, 1954), FRUS 1954 Korea Part2, p.1805.

각 사단이 8주마다 1,000명의 예비군을 훈련하면 8개월 내에 22~25만 명의 예비군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⁸⁴⁾ 국방부는 1954년 5월 한국을 방문한 벤 플리트 사절단에 예비사단 편성 계획을 제출했다. 군사원조 및 예비군 편성에 대한 설명은 5월 9일에 있었다.⁸⁵⁾ 육군본부의 예비사단 편성 계획이 포함된 제안서는 이날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1954년 상반기까지는 예비군 육성을 위한 명확한 계획이 정해지지 못했다. 징병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인원을 관리하고 훈련을 실시할 조직이 필요했다. 윌슨(Charles E. Wilson) 미 국방부장관은 1954년 7월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국군에 10개의 예비사단을 추가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개 사단은 철수하는 주한미군의 장비로 무장시키고 나머지 6개 사단은 편제의 20% 수준의 소화기를 제공하는 방안이었다.⁸⁶⁾ 미국 정부는 1954년 9월 14일 한국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제시한 한미합의의사록 초안에서 1955년 말까지 10개 예비사단을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⁸⁷⁾ 1954년 11월 17일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합의의사록에 서명하면서 10개 예비사단 편성이 시작됐다. 예비사단의 편성 경과는 다음과 같다.

84) HQ Republic of Korea Army, *Recommendations(Undated)*, RG330 Entry NM-12 185 Box12(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번호 AUS030_08_00C0011), pp.22~25.

85) 「국군증강책속의」, 『경향신문』 1954년 5월 10일 1면.

86)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208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ursday, July 29, 1954, *FRUS 1954 Korea Part2*, p.1855.

87) DA967743(Sep. 15, 1954), *FRUS 1954 Korea Part2*, p.1879.

<표 5> 한국군 예비사단 편성

사단명	편성일	창설 지역	비 고
제30사단	1955년 2월 20일	경기도 포천군	1955년 4월 19일 경기도 고양군으로 이동
제31사단	1955년 2월 20일	강원도 화천군	1955년 4월 15일 전남 광주시로 이동
제32사단	1955년 3월 20일	경기도 포천군	1955년 5월 10일 충남 조치원으로 이동
제33사단	1955년 3월 20일	강원도 양구군	1955년 5월 8일 경기도 부평으로 이동
제35사단	1955년 4월 20일	강원도 화천군	1955년 6월 6일 전북 전주시로 이동
제36사단	1955년 4월 20일	강원도 인제군	1955년 6월 6일 경북 안동군으로 이동
제37사단	1955년 5월 20일	강원도 양구군	1955년 7월 12일 충북 증평군으로 이동
제38사단	1955년 5월 20일	경기도 포천군	1955년 7월 15일 강원도 원주군으로 이동
제39사단	1955년 6월 20일	경기도 포천군	1955년 8월 1일 경남 창원군으로 이동
제50사단	1955년 6월 20일	강원도 화천군	1955년 8월 2일 경북 달성군으로 이동

* 출처: 육군본부 편, 『육군발전사 2』, 육군본부, 1970, 279~282쪽.

국방부는 10개 예비사단 창설을 완료한 뒤 1956년부터 예비군 소집과 동원훈련을 시작하기로 했다. 1956년 1월 11일 오후 2시 육군 제30사단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손원일 국방부장관, 정일권 육군참모총장, 미 제8군사령관 참석하에 첫 번째 예비군 동원훈련 입소식이 있었다.⁸⁸⁾ 예비사단이 실시하는 동원훈련은 연 6회에 걸쳐 시행되는 것으로 정비되었다. 3월부터 8월 중순까지 3차에 걸쳐 실시되는 상반기 동원훈련은 전역 1년차 예비역을 대상으로 했고 8월 하순부터 11월 초까지 3차에 걸쳐 실시되는 하반기 동원훈련은 전역 2년차 예비역을 대상으로 했다.⁸⁹⁾ 1960년 당시 각 예비사단의 동원훈련 실적은 다음과 같았다.

88) 「예비군입소식 11일 이대통령 임석하 거행」, 『경향신문』 1956년 1월 13일 3면.

89)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육군사 제4집』, (육군본부, 1962), 494쪽.

<표 6> 1960년 육군 예비사단의 동원훈련 실적(예비역 사병 수료인원 기준)

예비사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
30사단	3,220	1,095	1,925	1,605	1,356	2,157	11,358
31사단	3,313	2,024	3,389	3,364	3,365	3,376	18,831
32사단	2,745	2,231	2,909	3,036	3,257	3,125	17,303
33사단	3,081	1,852	2,805	2,794	3,381	3,119	17,201
35사단	2,515	1,835	1,855	2,974	2,930	2,091	14,205
36사단	2,563	2,105	1,788	3,134	3,423	3,422	16,435
37사단	3,051	1,719	674	2,846	3,011	3,371	14,672
38사단	2,617	1,247	903	2,738	2,550	2,666	12,721
39사단	3,343		1,091	2,805	3,265	2,770	13,274
50사단	3,152	1,220	1,594	3,369	3,562	3,460	16,357

* 출처: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육군사 제4집』, (육군본부, 1962) 494~517쪽

예비군 동원훈련은 첫 해부터 물의를 일으켰다. 동원훈련 기간이 35일에 달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 김용우(金用雨) 국방부장관은 1956년 8월 20일과 9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육군본부에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35일에서 25일로 축소할 것을 명령했다. 지나치게 긴 동원훈련 기간으로 예비군 소집 응소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매 훈련마다 평균 2,700명 중 1,500명 정도만 소집에 응하는 실정이었다. 소집대상 예비역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에 지장을 주는 점 때문에 예비군 동원훈련을 기피했다.⁹⁰⁾ 동원훈련이 1년에 35일에 달해 훈련을 받으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예비군을 기피했다.

90) "Command Report No.57, United Nations Command and Far East Command, October-December 1956", RG550 Entry 2A-2A(A) Box85, Record of HQ, U.S.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pp.52~54.

예비군의 처우가 열악한 점도 불만을 가중시켰다. 학도병 출신의 한 예비역은 동아일보에 익명으로 기고한 글에서 예비군의 열악한 처우를 비난했다. 그는 국가재정이 어려우므로 웬만한 천대는 감수하겠으나 예비군 훈련에서 받는 처우는 정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예비군 한명 당 하루 72환 60전의 부식비가 책정된다고 하나 훈련소에서는 약간의 된장으로 간을 한 ‘오렌지국’ 같은 부실한 식사를 내놓고 이로 인해 입소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백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유사시에 어떤 비극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⁹¹⁾ 생계 문제, 열악한 예비군 처우 등의 이유로 1956년에는 예비군 훈련 불참율이 40%에 달했다.⁹²⁾

국방부는 예비역들의 민원 제기와 농림부 등 타 부처의 건의를 받아들여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갔다. 예비군 제도는 1958년 1월 5일 개정되어 동원훈련 기간이 28일로 축소됐다. 예비사단의 예비군 소집은 연간 9회로 제한하고 매년 6월 22일부터 35일간, 9월 21일부터 35일간 총 70일은 농번기로 지정해 이 기간은 동원훈련을 중지했다. 그러나 이것도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농림부는 농번기를 매년 6월 1일부터 40일간, 10월 1일부터 40일간 총 80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육군본부와 미 제8군사령부는 농림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다.⁹³⁾

91) 「훈련병의 부식물을 개선시키라」, 『동아일보』 1956년 8월 7일 3면.

92) “Command Report No.57, United Nations Command and Far East Command, October–December 1956”, RG550 Entry 2A–2A(A) Box85, Record of HQ, U.S.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pp.52~54.

93) “Staff Study on Partial Revision of the ROK Army Reserve Training System” (Dec, 1958), RG338, Entry A–1 257, AG Central Files, General Correspondence, 1958: 326, Reserve Organizations (C), 1958,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번호 AUS004_23_00C0012], pp.3–4.; “Recommendations on Partial Revision of the ROK Army Reserve Program(U)”(Dec. 22, 1958), RG338, Entry A–1 257, AG Central Files, General Correspondence, 1958: 326, Reserve Organizations (C), 1958,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번호 AUS004_23_00C0012], pp.1~2.

이에 따라 1958년 12월 한국 육군본부가 제시한 예비군 훈련 개선안은 훈련일수는 28일로 유지하되 예비군 동원 기간은 농림부의 방안을 수용해 연간 6회로 축소하고 매회 소집 인원을 늘리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에는 전역 후 3년간 동원훈련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전역 후 2년간만 동원훈련을 받도록 했다.⁹⁴⁾ 예비군 훈련 개편안은 1959년 2월 27일 도입되었다.⁹⁵⁾

1950년대 중후반 예비사단의 예비전력 동원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역 복무를 마친 예비역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으로써 징병제의 한 축인 예비전력 동원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다. 예비사단의 창설로써 한국은 완결적인 징집 및 소집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5. 결 론

제1공화국 시기 육군의 예비전력 동원체제 형성 과정은 징병제를 제도화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징병제를 통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해 교육훈련을 마친 인력은 사회로 복귀한 뒤 예비전력을 형성하고 유사시 동원의 대상이 되었다. 즉 징병제는 평시 징병을 통해 확보한 예비전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완결성을 갖출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제1공화국 시기 육군의 예비전력 동원체제 형성 과정은 예비사

94) "Partial Revision of ROK Army Reserve Program"(Dec. 30, 1958), RG338, Entry A-1 257, AG Central Files, General Correspondence, 1958: 326, Reserve Organizations (C), 1958,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번호 AUS004_23_00C0012], p.1.

95)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사 3』, 1961, 34쪽.

단 편성을 통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1공화국 시기 국방부는 예비전력 동원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수년간에 걸쳐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1948년부터 추진된 호국군 편성이다. 호국군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주방위군 제도의 영향을 받은 모병제 성격의 제도였다. 이 때문에 1949년 병역법이 선포되고 징병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자 모병제에 기반한 호국군은 모순적인 존재가 되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징병제를 통해 예비역이 배출되면 민간인을 모병 대상으로 한 호국군은 존립할 근거가 없었다. 또한 건군 초기 부족한 물질적 기반 때문에 호국군을 원활히 유지하기도 어려웠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훈련에 필요한 장비 부족 때문에 호국군의 군사적 기능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호국군은 1950년 해체되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예비전력 동원체제를 다시 구축하려고 시도한 계기는 중공군의 참전이였다. 국방부는 제2국민병 대상자를 동원하여 국민방위군을 편성하고 이를 예비전력으로 육성하려 했다. 병역법에 규정된 제2국민병 대상자를 동원한 것에서 나타나듯 국민방위군은 본격적으로 징병제의 성격을 가진 예비전력 동원체제였다. 그러나 국민방위군은 충분한 준비 없이 단기간에 급조되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고, 호국군과 마찬가지로 군사 훈련에 필요한 물질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해체되고 말았다. 이후 국민방위군의 조직은 노무사단 등으로 전환되었다. 국방부는 국민방위군의 실패를 교훈 삼아 1953년 민병대를 조직했다. 민병대의 운용방식은 호국군에 가까웠으나 동원 방식에서는 징병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55년 육군이 예비사단을 편성하면서 민병대는 존립할 근거를 잃었다. 국방부는 예비사단을 통해 예비전력 동원을 국방부의 지휘계통으로 일원화시켰다. 효율적인 예비전력 동원체제가 수립되면서 민병대는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육군의 예비사단 창설은 징병제의 틀 안에서 예비전력 동원체제를 완성하는 계기였다. 징병을 통해 현역병으로 군사교육을 받은 인력은 사회로 복귀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예비사단에 동원되어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써 한국의 징병제는 징집 및 소집 체제를 완전히 갖추 수 있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20. 1. 3, 심사수정일 : 2020. 2. 6, 게재확정일 : 2020. 2. 18.)

주제어 : 징병제, 예비군, 동원, 한국전쟁, 호국군, 국민방위군, 민병대,
예비사단

<참고문헌>

- RG330, Entry NM-12 185. Box 10
- RG338, Entry A1-1301 Box 17(국사편찬위원회 등록번호 CO6365)
- RG338, Entry A-1 257, AG Central Files, General Correspondence, 1958: 326, Reserve Organizations (C), 1958, (국사편찬위원회 등록번호 IM28276)
- RG550, Entry 2A-2A(A) Box85
- RG554, Entry UD-UP19 Box2~Box10
- 국방부, 『國防部史 第1輯』, 서울: 국방부, 1954.
- 國防軍史研究所, 『韓國戰爭支援史: 人事·軍需·民事支援』, 서울: 國防軍史研究所, 1997.
<http://uci.or.kr//G500:1310377-00000000164009>
- 國防軍史研究所 編, 『韓國戰爭資料叢書57: 美國務府 韓國國內狀況關係 文書 XIX 1951.4.13.~6.18』, 서울: 國防軍史研究所, 1999.
- 남정옥, 『6.25전쟁시 예비전력과 국민방위군』,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0.
- 民兵總司令部, 『民兵隊一年誌』, 1954.
- 양영조, 『한국전쟁과 동북아 국가정책』, 서울: 선인, 2007.
<http://uci.or.kr//G701:B-00091455647@N2M>
- 尹宇景, 『晩省錄 : 단 한번 잠시 느껴본 행복감』, 서울: 서울프레스, 1992.
-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육군사 제4집』, 서울: 육군본부, 1962.
- 육군본부 편, 『육군발전사 上』, 서울: 육군본부, 1970.
- 陸軍士官學校第八期生會, 『老兵들의 證言 : 陸士八期史』, 서울: 1992.
- 韓鎔源, 『創軍』, 서울: 博英社, 1984.
- 護國軍士官學校總同窓會編, 『護國軍史』, 서울: 護國軍士官學校總同窓會, 2001.
- Michael D. Doubler, *Civilian in Peace, Soldier in War : The Army National Guard, 1636-2000*,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3.

박일송, 「전쟁중 국군의 충원과 교육훈련」,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http://uci.or.kr//G901:A-0006035661@N2M>

申應均, 「大韓陸軍護國軍의 兵制的 考察」, 『國防』 제3호, 1949년 3월

申英鎭, 「韓國戰爭時 動員研究」, 『韓國戰爭研究: 占領政策·勞務運用·動員』, 국방군사연구소, 1995.

이상호, 「한국전쟁기 예비 제5군단과 육군예비사관학교」, 『아세아연구』 62-4,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9.

주영윤, 「예비군 창설 정책결정과정 연구」, 『군사연구』 143, 육군군사연구소, 2017.

Heinz Stübiger, “Die Wehrverfassung Preußens in der Reformzeit. Wehrpflicht im Spannungsfeld von Restauration und Revolution 1815-1860”, Die Wehrpflicht: Entstehung, Erscheinungsformen und politisch-militärische Wirkung, München: Oldenbourg, 1994.

John Whiteclay Chambers II, “American Views of Conscription and the German Nation in Arms in the Franco-Prussian War” in *The People in Arms : Military Myth and National Mobilization since the French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Abstract)

The Process for Development of the reserve forces mobilization system of the R.O.K Army during the period of the first republic in Korea between 1948-1960

Yoon, Si-won

The conscription system of Korea was established by the 1949 military service law.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stabilization of the draft system, the establishment of a reserve manpower mobilization system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During the period of the first Republic of Korea, the Ministry of Defense suffered trial and error over the years to form a reserve power mobilization system. The first stage is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Guard. The National Guard was essentially the type volunteer military system borrowed by the US National Guard system. As a result, the Military Service Act was declared in 1949, and conscription was introduced systematically. In the long term, if the reserves were discharged through conscription, the National Guard that recruited civilians had no basis for existence. In addition, it was difficult to keep the National Guard forces smoothly due to the lack of material base in the early days of the military. Due to the lack of manpower to train and the equipment necessary for training, the military functions of National Guard were limited. Because of this, the National Guard was disbanded in 1950.

The ROK Ministry of Defense attempted to reestablish the reserve mobilization system after the interven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army during Korean War. The Ministry of Defense mobilized the 2nd grade to form the National Defense Forces and foster them as reserve forces. The National Defense Forces based upon the characteristics of conscription system. However, the National Defense Forces dismantled in a short period of time without sufficient preparation, causing a lot of controversy. Since

then,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Defense Forces has been transformed into labor divisions. The Department of Defense organized a Citizen Armed Forces in 1953, learning from the failure of the national defense forces.

In 1955, however, the Army organized 10 reserve divisions and the Citizen Armed Forces lost its ground for existence. The Ministry of Defense has unified reserve power mobilization into the command system of itself through the Reserve Division. The Citizen Armed Forces dismantled naturally as an efficient reserve power mobilization system was established. The establishment of the Army's reserve division was an opportunity to complete the reserve mobilization syste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draft system. Personnel trained in military service as active duty soldiers were able to be regularly called up into the reserve division to receive military education after they returned to society. As a result, the conscription system of Korea could be completed.

Keywords : Military Conscription, Army National Guard(Ho Guk Gun), National Guard(Guk Min Bang Wi Gun), National Militia, Reserve Divisions